

<논 문>

# 지방재정 관점의 고향사랑기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전 병 욱\*

---

## Ⅰ 목 차 Ⅰ

---

I. 서 론 .....	7	III. 지방재정 관점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안 .....	35
II.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분석 .....	13	1. 지방소득세의 부당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개편	
1. 관련 법령의 분석		2. 법인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시행 방지	
2. 시행 실적의 분석			
3.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분석			
		IV. 결 론 .....	49

---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투고일 : 2026. 3. 2. 1차수정일 : 2026. 4. 20. 게재확정일 : 2026. 5. 14.

## 6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 <국문초록>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의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개별 광역·기초지자체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동(同)제도의 확대에는 기부자에 대한 10만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까지의 답례품이(경제적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및 세액공제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감이 사실상 동일한 상태에서 답례품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제외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세액공제(90.9%)가 국세인 소득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는 기부금에 비례하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기부금 경쟁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등적이고,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고한 2008년부터 시행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도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同)제도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왜곡된 재정수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시행 초기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합리적 개편방안을 사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조세법적 관점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안은 먼저, 지방소득세의 부당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개편이다.

즉, 주소지 지자체에 대한 기부 금지로 인해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거액의 기부금 순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특법상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의 1/10만큼 적용되는 지방소득세의 공제액이 주소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수입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기부금 수입의 비중에 비해 과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 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동(同)재정손실의 과소계상과 함께 동(同)제도의 정착 이후에 모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재정손실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매우 큰 제약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장래의 과도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재정수입 증감을 정산해서 지방소득세의 과다공제로 인한 “재정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도별 지방소

득세수의 정산방안은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를 참고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인과 지자체 간 인허가, 계약, 보조금 및 규제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부가 “관계자금”이나 “거래성자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같이 실제 법인 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의 특정 지자체 집중이 더욱 현저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인 기부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되,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산절차를 지방세법령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주제어** :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정산방안, 지방소비세

## I. 서 론

2021. 10. 19.자로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sup>1)</sup>에 의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취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특산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를 반영한 동(同)제도의 당초 주요 내용 및 시행방식은 <표 1> 및 <그림 1>과 같다.<sup>2)</sup>

---

1) 법률 제18489호, 2023. 1. 1. 시행.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http://www.mois.go.kr/f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에서 인용하였다(최종방문일 : 2026. 3. 2.).

8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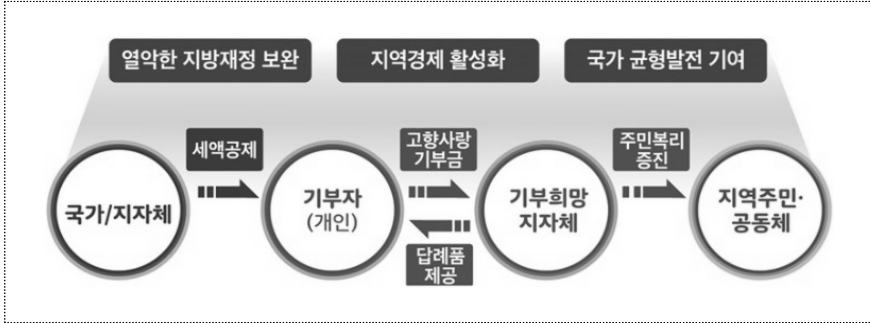
<표 1> 고향사랑기부제의 당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부 주체 · 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sup>3)</sup>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sup>4)</sup>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sup>1)</sup> ,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sup>2)</sup>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 ·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sup>6)</sup>
운영절차	모금홍보(지자체) → 기부(개인) → 접수 · 확인(지자체) → 답례품 수령 ·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모금액 사용(지자체) → 결산(기금심의위원회) <sup>7)</sup>

- \*<sup>1)</sup> 기부액의 (100/110)인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이고, 나머지 (10/110)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기부액이 10만원인 경우에 각각 90,910원 및 9,090원)
- \*<sup>2)</sup> 15%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 · 1.5%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 \*<sup>1)\*2)</sup>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sup>8)</sup>

-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 5)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58조 제1항.
-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
- 8)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조특법 제58조 제2항), 이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기부금과 세액공제 ·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제3항).

<그림 1>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방식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의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개별 광역·기초지자체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동(同)제도의 확대에는 <표 1>과 같은 기부자에 대한 10만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까지의 담레품이(즉, 경제적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sup>9)</sup>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및 세액공제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감이 사실상 동일한 상태에서 지자체의 담레품 지출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제외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세액공제(공제액의 90.9%)가 국세인 소득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는 기부금에 비례하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기부금 경쟁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지자체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는 인구통계적 특성 및 담레품의

9) 이와 같은 운영상의 특징을 반영해서 2024년 연말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이트에 접속이 급증하기도 하였다(2024. 12. 31.자 조선일보 기사(“1000명 대기 중”...연말정산 앞두고 기부 사이트 접속 급증)에서 인용).

10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낮은 경쟁력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출액에 비해 기부금 수입이 낮아서 다른 시·도로 거액의 기부금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지자체의 주민이 다른 시·도의 기초·광역지자체에 동(同)기부금을 지출하면 기부금액의 9.1%만큼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가<sup>10)</sup>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기회비용을 포함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보통교부세를 통해 보전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정 지자체의 우회적 “재정피해”의 문제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계속적 확대에 따라 장래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고한 2008년부터 시행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도<sup>11)</sup>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同)제도의 장기적·안정적 운영

- 10)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는 이들 중 특별시세·광역시세, 시·군세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에 해당한다.

<과세권자에 따른 지방세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특별시·광역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구세
도	도세 및 시·군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 1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비교>

구분	고향사랑기부제(한국)	고향납세제도(일본)
기부 주체	개인	개인 및 법인
기부 대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	주소지를 포함한 전체 지자체*1
기부금 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상한액 없음*2
기부 혜택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소득세 소득공제 및 주민세 세액공제*3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권고)

\*1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대

을 위해서는 왜곡된 재정수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시행 초기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합리적 개편방안을 사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지자체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과 함께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同)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공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제도 개편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표 2>와 같이 동(同)제도 시행 이전의 구체적 도입 논의 및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분석에 대한 것들과 함께 시행 이후의 개선방안, 시행효과, 시행사례 및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것들이 있다. 그 밖에 기부대상 지자체의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답례품 및 홍보방식을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선행연구(성격별 구분)

구분	선행연구
구체적 도입 논의	임정빈 등(2017), 홍근석·임정빈(2019), 홍근석 등(2019), 엄명배(2020), 엄명배(2021), 황해동(2022), 조진우(2022)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의 비교 연구	신승근·조경희(2017), 심재승(2017), 오충택·나주몽(2022), 국중호 등(2024)

해 이루어짐.

\*2 기부금의 최저한도액은 2,000엔

\*3 구체적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고, 기부자의 연소득 및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한도는 상이함.

구분	공제액
소득세 소득공제	(기부금 - 2,000엔)*4
주민세 세액공제(기본)	(기부금 - 2,000엔) × 주민세율(10%)
주민세 세액공제(특례)*5	(기부금 - 2,000엔) × {1 - (소득세율*4 + 주민세율)}

\*4 소득세율은 5%~45%의 누진세율

\*5 주민세 세액공제(특례)의 상한은 주민세소득할의 20%

12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구분	선행연구
개선방안 논의	이상신(2022), 황이경·김남철(2023), 이선희·이준영(2023), 엄명배(2024)
시행효과 분석	전영준·홍근석(2024), 신승근·조경희(2024), 곽제훈·신승근(2024)
시행사례 분석	최근열·남인수(2023), 송영현(2023)
경제학적 분석	김홍환·이경우(2023), 유보람 등(2014)
답례품 및 홍보 관련 분석	이동호(2023), 엄명배(2023), 이현주 등(2023), 조원영·강기일(2023)

이상과 같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다소 제한적인 선행연구는 전체적인 시행방식·효과의 현황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반면 재정수입과 관련한 동(同)제도의 조세법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안정적 운영에 공헌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면서 개별 지자체의 합리적 재정 운용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와 관련한 동(同)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측면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분석

### 1. 관련 법령의 분석

####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제의 근거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제2조 제1호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동(同)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동(同)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sup>12)</sup> 동(同)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2,000만원인데(동법 제8조 제3항), 2025년의 동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동(同)금액은 <표 1>과 같이 2023년의 최초 시행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 500만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동(同)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동(同)기금은 모집·운용 비용 및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표 3>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12)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하고,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14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사용되어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sup>13)</sup>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동(同)기부금의 10%~1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해서 동(同)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당해연도 동(同)기부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同)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동조 제3항·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표 3>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데(동법 제12조 제2항),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와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방법 중에서 “민간플랫폼”이 2024년 12월부터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의 온라인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나. 소득세법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인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데(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

13) 다만, 동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동법 제11조 제2항 단서).

직·양도소득), 이들 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결집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과세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역년주의 원칙이고,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인 납세지는 주소지이다(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는 <표 4>와 같다. 여기서 개별 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중 “기부금공제”에 포함되어서 종합소득세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sup>14)</sup> 지급한 공익성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이하 “필요경비산입 방식”, ①) 종합소득공제의 특별공제 항목인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이하 “기부금공제 방식”, ②), 해당 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표 5>와 같다.

<표 4>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6%부터 45%까지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
종합소득결정세액	

14)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판정시 소득요건은 적용하되,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표 5> 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세무처리 방법

종합소득자의 구분	기부금 세무처리 방법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①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②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	①·② 모두 적용가능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음료판매달원 포함.<sup>15)</sup>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의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에는 <표 6>과 같이 고향사랑기부금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10만원을 초과하는 동(同)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세법상 가장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표 6> 공제대상 기부금의 구성 및 범위

구분	공제대상 기부금	비고
정치자금기부금 <sup>16)</sup>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①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개인에 한함
	②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과 동일
	③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개인에 한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sup>17)</sup>	
일반기부금	①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기부금	개인에 한함
	②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개인에 한함

구체적으로,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세법상 처리는 <표 7>과 같다(조특법 제58조

15) 이들은 추계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6)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조특법 76 ①).

제1항). 여기서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동조 제2항),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동(同)기부금과 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초과한 동(同)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제3항).

<표 7>에서 일반 거주자의 10만원~2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40%의 공제율은 2026년의 조특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표 1>과 같이 2023년의 최초 시행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 15%의 공제율에 비해서는 조세혜택이 확대된 것이다(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16.5% → 44%).<sup>18)</sup>

구분		거주자의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조세특례
①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		정치자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기부한 정치자금 × (100 ÷ 110)
②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을 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취급)	일반 거주자	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 × 15% • 25%*
	사업자인 거주자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산입 •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17)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구분한 “기부금 세액공제”의 단계별 세액공제 한도액 및 공제대상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1 한도액>

단계	구분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액
1단계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기준액*2 × 100%
2단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기준액 × 30%
3단계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	한도기준액 × 30%
		종교단체기부금 ○	(한도기준액 × 10%) + MIN((한도기준액 × 20%), 종교단체기부금 외 일반기부금)

<표 7> 고행사랑 기부금의 조특법상 처리

구분		고행사랑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
①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행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기부한 고행사랑기부금 × (100 ÷ 110)
②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기부한 고행사랑기부금 - 10만원)을 특례기부금과 유사하게 취급	일반 거주자	고행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10만원 × (100 ÷ 110) + (고행사랑기부금 - 10만원) × 40%
	사업자인 거주자	고행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10만원 × (100 ÷ 110) + 10만원 × 40% + (고행사랑기부금 - 20만원) × 15% <sup>19)</sup>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산입 •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1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기부금의 공제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2 한도기준액 = (기준소득금액 - 전단계기부금(들)의 공제액)

- ...기부금의 공제액  
= MIN(...기부금 지출액, ...기부금공제 한도액) +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공제액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1	기부금 세액공제액*2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1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

## 다. 지방세법

지방소득세는 2013년까지는 소득세액·법인세액(과세표준)의 10%로 과세하는 “부가세”로 과세했으나,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와 연계하기 위해 “독립세”로 전환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의 납세지인 주소지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는 <표 4>와 유사하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의 100분의 10인 표준세율(0.6%부터 4.5%까지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세액감면·공제를 차감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세액감면·공제”도 <표 4>의 소득세의 세액감면·공제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기 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167조의2 제1항)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표 7>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100/110)) 및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동(同)기부금의 (10/110))를 통해 <표 1>과 같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 2. 시행 실적의 분석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실적과 관련하여 <표 8>과 같이 연도별 모금액이 651억원(2023년) → 879억원(2024년) → 1,515억원(2025년)으로 증가했는데,<sup>20)</sup>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동(同)제도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 수단으

20) 이번 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약 650억원 모금, 제도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 2024. 1. 10.자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의 마음,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자체로 세 배 넘게 모였다”, 2025. 1. 22.자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 1,500억원 달성”, 2026. 1. 2.자 보

20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부건수(53만건(2023년) → 77만건(2024년) → 139만건(2025년))와 함께 답례품 판매액(151억원(2023년)<sup>21)</sup> → 205억원(2024년) → 316억원(2025년))도 꾸준히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실적(2023년 ~ 2025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모금액	651억원	879억원	1,515억원
기부건수	53만건	77만건	139만건
답례품 판매액	151억원	205억원	316억원

기부액의 “전액 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건수의 비율은 97% (2023년) → 98%(2024년) → 98%(2025년)인데,<sup>22)</sup> 이를 통해 “전액 공제”가 기부 참여에 큰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5년의 기부액 한도 확대 전에 기부액이 상한액인 500만원인 기부건수는 2,052건(2023년) → 1,444건(2024년)이다.<sup>23)</sup>

특히, <표 8>과 같은 2025년의 모금액 급증은 산불·호우 등의 대형 재

도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1) 답례품 포인트 지급액은 193억원(≐ 651억원 × 30%).

22) 2023년과 2024년의 기부금액 규모별 기부건수는 아래와 같다.

<기부금액 규모별 기부건수>

(단위 : 건)	2023년		2024년	
1만원 미만	39,572	7.5%	9,033	1.2%
1만원~10만원	29,627	5.6%	40,984	5.3%
10만원	441,291	83.8%	709,296	91.7%
10만원~100만원	8,882	1.7%	9,245	1.2%
100만원~500만원	4,881	0.9%	3,709	0.5%
500만원	2,052	0.4%	1,444	0.2%
합계	526,305	100%	773,711	100%

23) 2023년과 2024년의 연령대별 기부건수는 아래와 같다.

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과 함께 체계적 홍보와 제도 개선이 맞물려 국민적 동참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여기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민간 플랫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기부 편의성·접근성의 개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2023년과 2024년의 기부방법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기부방법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2023년~2024년)

(억원)	온라인				오프라인*2		합계	
	고향사랑e음 <sup>24)</sup>		민간플랫폼*1					
2023년	524.4	80.6%			126.2	19.4%	650.6	100%
2024년	731.8	83.2%	54.2	6.2%	93.3	10.6%	879.3	100%

\*1 위기브·액티부키(전문기업) 및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2 농협은행 창구

2023년과 2024년의 시·도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모금건수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시·군·구별로 구분해서 평균 모금액 및 모금건수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sup>25)</sup>

<연령대별 기부건수>

(단위 : 천건)	2023년		2024년	
19세 이하	0.6	0.1%	0.4	0.1%
20대	42.4	8.1%	90.6	12.3%
30대	155.2	29.5%	243.7	33.2%
40대	141.9	27.0%	198.5	27.0%
50대	130.7	24.8%	163.4	22.3%
60대	39.4	7.5%	31.6	4.3%
70대	11.4	2.2%	4.3	0.6%
80대 이상	4.4	0.8%	0.8	0.1%

24) 고향사랑 e음, [www.ilovegohyang.go.kr](http://www.ilovegohyang.go.kr)(최종방문일 : 2026. 3. 2.).

25) 세종·제주와 함께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의 모금액 규모별 지자체 수와 함께 2023년의 상위 6개 및 2024년의 상위 10개 지자체의 모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위 10개 지자체의 모금액 평균은 11.4억원(2023년) →

22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표 10> 시·도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모금건수(2023년~2024년)

(억원·천건)	모금액					건수				
	2023년		2024년		증가율	2023년		2024년		증가율
서울	24.8	3.8%	31.2	3.5%	25.8%	27	5.1%	31	4.0%	14.8%
부산	12.7	2.0%	19.5	2.2%	53.5%	15	2.9%	18	2.3%	20.0%
대구	7.5	1.2%	8.9	1.0%	18.7%	9	1.7%	8	1.0%	-11.1%
인천	7.7	1.2%	10.2	1.2%	32.5%	9	1.7%	10	1.3%	11.1%
광주	15.2	2.3%	45.3	5.2%	198.0%	13	2.5%	43	5.6%	230.8%
대전	6.3	1.0%	19.9	2.3%	215.9%	6	1.1%	20	2.6%	233.3%
울산	9.9	1.5%	15.2	1.7%	53.5%	9	1.7%	13	1.7%	44.4%
세종	1.5	0.2%	3.0	0.3%	100.0%	2	0.4%	3	0.4%	50.0%
경기	39.1	6.0%	53.6	6.1%	37.1%	41	7.8%	54	7.0%	31.7%
강원	52.9	8.1%	69.9	7.9%	32.1%	44	8.4%	62	8.0%	40.9%
충북	31.1	4.8%	42.7	4.9%	37.3%	22	4.2%	36	4.7%	63.6%

17.4억원(2024년)으로 증가하였다.

<모금액 규모별 지자체 수>

(단위 : 개)	2023년	2024년
20억원 이상	1	3
15억원~20억	1	2
10억원~15억원	2	6
5억원~10억원	25	35
3억원~5억원	52	51
1억원~3억원	77	82
1억원 미만	70	49
계	228	228

<상위 6개 지자체의 모금액(2023년)>

<상위 10개 지자체의 모금액(2024년)>

지자체	모금액(억원)	지자체	모금액(억원)	지자체	모금액(억원)	지자체	모금액(억원)
전남 담양	22.4	전남 영광	9.3	제주	35.93	충남 논산	14.18
제주	18.2			광주 동	23.95	경북 영덕	11.08
전남 고흥	12.2			전남 담양	23.02	전북 정읍	10.86
전남 나주	10.6			전남 영암	18.07	경북 예천	10.53
경북 예천	9.7			전남 무안	15.57	전남 곡성	10.46

(억원·천건)	모금액					건수				
	2023년		2024년		증가율	2023년		2024년		증가율
충남	43.2	6.6%	63.5	7.2%	47.0%	38	7.2%	61	7.9%	60.5%
전북	84.8	13.0%	93.2	10.6%	9.9%	64	12.2%	73	9.4%	14.1%
전남	143.4	22.0%	187.5	21.3%	30.8%	93	17.7%	157	20.3%	68.8%
경북	90.0	13.8%	103.9	11.8%	15.4%	66	12.5%	87	11.2%	31.8%
경남	62.5	9.6%	75.9	8.6%	21.4%	52	9.9%	63	8.1%	21.2%
제주	18.2	2.8%	35.9	4.1%	97.3%	17	3.2%	34	4.4%	100.0%
합계	650.6	100%	879.3	100%	35.2%	526	100%	774	100%	47.1%

<표 11> 시·군·구별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 및 모금건수(2023년~2024년)

(억원·건)	모금액			건수		
	2023년	2024년	증가율	2023년	2024년	증가율
시(75개)	2.9	3.8	30%	2,635	3,558	35%
군(82개)	3.8	4.7	24%	2,586	3,745	45%
자치구(69개)	0.9	1.7	80%	990	1,634	65%

2024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여부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이동을 분석하면 <표 12>와 같고, 수도권 기부자들의 주요 기부지역은 전남(23.1%), 경북(11.4%), 강원(11.3%) 및 전북(11.2%) 등의 순이다. 또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주요 광역시는 인근 도에 대한 기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부산 → 경남(27%),<sup>26)</sup> 대구 → 경북(50%), 광주 → 전남(70%), 대전 → 충남(24%).

<표 12> 수도권 여부에 따른 기부금액의 이동(2024년)

(억원)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기부금액	78.6	340.1	16.4	444.2	879.3
비율	8.9%	38.7% <sup>27)</sup>	1.9%	50.5%	100%

26) 부산의 부산 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부비율은 13%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부 참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액 공제”와 관련해서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표 7>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총급여액의 규모별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총급여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동(同)신고현황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고, <표 7>과 같이 사업자인 거주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同)공제 대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도 <표 4>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작거나 “0”인(과세소득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동(同)지출액에도 불구하고 동(同)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제될 수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同)공제의 최종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 13>의 공제액에 1.1을 곱해서 동(同)지출액을 역산할 수는 없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동(同)지출액의 대략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표 13>의 공제세액 합계액에 1.1을 곱한 426억원(2023년) 및 656억원(2024년)은 <표 8>의 전체 모금액(651억원·879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계층에서는 일반적인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출액의 90.9%만큼 받을 수 있는 동(同)공제가 상당 부분 배제되는 것과 함께 고소득계층에서는 10만원 초과분의 동(同)지출액에 대해서는 15%만큼만(90.9%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비율만큼) 동(同)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28)</sup> 구체적으로, 저소득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액공제의 배제로 인해 5,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총급여액에서는 과세소득의 증가에 따라 1인당 공제세액이 10만원의 동(同)지출액에 대한 90.9천

27) 2023년(35.9%)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28)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약 650억원 모금, 제도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 2024. 1. 10.자 보도자료는 2023년의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의 국세·지방세의 합계액을 5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실제 공제세액(426억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원의 공제액까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이 5,000만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계층에서는 1인당 공제세액이 90.9천원의 공제액보다 커져서 1인당 동(同)지출액이 10만원보다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즉, 총급여액이 5,000만원·6,000만원인 중간 수준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저소득계층에서는 10만원의 동(同)지출액이 일반적인 반면 그보다 더 높은 고소득계층에서는 조세혜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同)지출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더욱 빈번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동(同)기부금의 지출행태는 2024년까지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의 조세혜택을 제공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sup>30)</sup> 이러한 차이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다르게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의 제공을 통한 유인 제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13> 총급여액의 규모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명·백만원·천원)	2023년			2024년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0.1억원 이하	66	1	15.2	93	2	21.5
0.1억원~0.15억원	314	12	38.2	416	18	43.3
0.15억원~0.2억원	1,123	55	49.0	1,546	88	56.9
0.2억원~0.3억원	13,333	949	71.2	16,559	1,314	79.4
0.3억원~0.4억원	35,943	3,029	84.3	52,812	4,608	87.3
0.4억원~0.45억원	24,903	2,189	87.9	39,353	3,514	89.3

29) 예컨대, 2024년의 10억원 초과 총급여액 구간의 398.6천원의 1인당 공제세액에 대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조세혜택을 완전하게 받은 경우의 동(同)지출액을 역산하면 215만1,000원으로 일반적인 10만원의 지출액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즉,  $\{(398.6\text{천원} - 90.9\text{천원}) \div 15\% \} + (90.9\text{천원} \times 1.1) = 2,151\text{천원}$ ).

30)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표 13>과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6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5호(제15권 제2호))

(명·백만원·천원)	2023년			2024년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0.45억원~0.5억원	26,814	2,405	89.7	43,334	3,925	90.6
0.5억원~0.6억원	53,881	4,893	90.8	86,360	7,867	91.1
0.6억원~0.8억원	100,061	9,167	91.6	153,199	14,004	91.4
0.8억원~1억원	75,579	6,982	92.4	117,773	10,822	91.9
1억원~2억원 <sup>31)</sup>	80,970	7,821	96.6	127,904	12,032	94.1
2억원~3억원	5,014	656	130.8	8,369	914	109.2
3억원~5억원	1,494	294	196.8	2,167	308	142.1
5억원~10억원	473	166	351.0	566	134	236.7
10억원 초과	160	84	525.0	138	55	398.6
합계	420,128	38,703	92.1	650,589	59,605 <sup>32)</sup>	91.6

<충급여액의 규모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명·백만원 ·천원)	2023년			2024년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0.1억원 이하	434	4	9.2	389	3	7.7
0.1억원~0.15억원	2,074	22	10.6	1,813	23	12.7
0.15억원~0.2억원	10,471	126	12.0	9,494	126	13.3
0.2억원~0.3억원	109,285	1,742	15.9	97,999	1,813	18.5
0.3억원~0.4억원	120,945	2,601	21.5	120,082	3,035	25.3
0.4억원~0.45억원	53,490	1,317	24.6	53,186	1,555	29.2
0.45억원~0.5억원	50,859	1,335	26.2	50,139	1,480	29.5
0.5억원~0.6억원	94,565	2,568	27.2	91,356	3,116	34.1
0.6억원~0.8억원	126,334	4,310	34.1	131,064	5,202	39.7
0.8억원~1억원	81,333	3,527	43.4	84,612	4,272	50.5
1억원~2억원	118,116	6,074	51.4	131,185	8,028	61.2
2억원~3억원	9,901	722	72.9	12,519	1,273	101.7
3억원~5억원	3,750	506	134.9	4,995	855	171.2
5억원~10억원	1,301	363	279.0	1,774	610	343.9
10억원 초과	459	248	540.3	665	422	634.6
합계	783,317	25,465	32.5	791,272	31,813	40.2

31) 국세통계연보는 전체 인원을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 구분

### 3.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분석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는데, 동(同)제도는 납세자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정촌)<sup>33)</sup> 기부하면 기부액에서 2,000엔의 자기부담금(적용 하한)을 제외한 전액을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후에 고향납세의 기부금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인하(5,000엔 → 2,000엔, 2011년) 및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한도의 상향조정(2배 정도로 확대, 2015년)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동(同)기부금의 규모는 81억엔(2008년) → 1조1,175억엔(2023년)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된 기부자에 대한 모금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도 동(同)기부금의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데, 시행 초기에 기부금의 80%를 초과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까지 나타나는 치열한 “답례품 경쟁”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총무성은 동(同)비율의 상한을 30%로 정하는 “모집적합성 기준”을 고시하였다.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개인의 기부만 가능했으나, 2016년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창생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기업판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업판 고향납세제도에서 법인은 기부금액의 30%의 손금산입과 함께 법인 관련 세제(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에서 최대 60%의

---

한 후에 전자와 다르게 후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구간을 추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1억원 초과”에 모두 포함시켰는데, 이들 구간에 포함된 인원 및 공제세액은 편의상 “1억원~2억원”의 구간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이후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2) 반올림으로 인해 국세통계연보의 합계액(59,606백만원)과 차이가 있는데, 분석의 완결성을 위해 구간별 공제세액의 합계액을 이용했다.

33)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인데, 고향납세의 대부분의 기부대상은 시정촌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과 다르게 기부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되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기업관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법인의 기부금액은 470억엔으로 개인 기부금액(1조1,175억엔)의 1/24 정도의 수준이다.<sup>34)</sup>

개인의 고향납세 기부금에 대해서는 <표 14>와 같이 소득세의 소득공제와 함께 지방세인 개인주민세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공제 하한액인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된다. 단, 개인주민세 특례공제의 한도 적용으로 인해 (고향납세액 - 2,000엔)이 전액 공제되는 고향납세액에는 상한액이 있는데,<sup>35)</sup> 동(同)상한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고, 동일한 소득에서는 가족 구성이 단순할수록 높게 계산된다.

<표 14> 개인의 고향납세 기부금에 대한 일본의 세법상 취급

세목	내용
소득세	(고향납세액 - 2,000엔)의 소득공제
개인주민세(기본공제)	{(고향납세액 - 2,000엔) × 10%}의 세액공제
개인주민세(특례공제)	(고향납세액 - 2,000엔) × (100% - 10% - 소득세 세율)의 세액공제 (단, (주민세 소득할액 × 20%)의 한도 적용)

일본의 납세자는 <표 14>의 소득세·개인주민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2015. 4. 1.부터는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34) 이와 같이 법인 기부금액의 규모가 작은 것은 기부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제한해서 기부의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기업에 대해 기부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공여하는 것, 입찰과 인허가로 편의를 도모하는 것 및 유리한 이율로 용자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신두섭·염명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제18집 제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6, 169~170면.

35) 예컨대, 기부자 본인의 급여소득이 1,000만엔이고, 가족 구성이 맞벌이 + 자녀2명(대학생·고등학생)인 경우의 동(同)상한액은 153,000엔이다.

통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이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 등은 고향납세처가 5개 단체 이내인 경우에 개별 지자체에 고향납세를 신청하면 확정신고가 면제된다.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신 <표 14>의 전체 금액에 대한 개인주민세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즉, 기부자인 개인의 절세효과는 동일한 반면 국세인 소득세의 세수는 감소하지 않고, 지방세인 개인주민세의 세수는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공제분을 지자체의 개인주민세 공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개인주민세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향납세의 모금액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정수입의 순

<총급여액의 규모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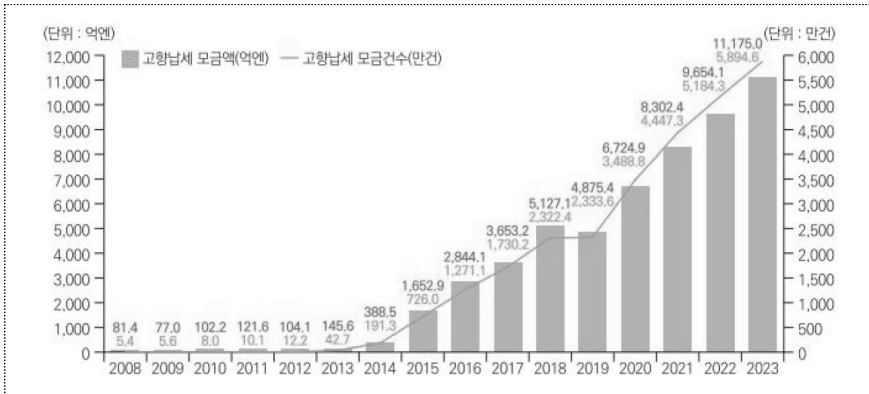
(명·백만원 ·천원)	2023년			2024년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1인당 공제세액
0.1억원 이하	434	4	9.2	389	3	7.7
0.1억원~0.15억원	2,074	22	10.6	1,813	23	12.7
0.15억원~0.2억원	10,471	126	12.0	9,494	126	13.3
0.2억원~0.3억원	109,285	1,742	15.9	97,999	1,813	18.5
0.3억원~0.4억원	120,945	2,601	21.5	120,082	3,035	25.3
0.4억원~0.45억원	53,490	1,317	24.6	53,186	1,555	29.2
0.45억원~0.5억원	50,859	1,335	26.2	50,139	1,480	29.5
0.5억원~0.6억원	94,565	2,568	27.2	91,356	3,116	34.1
0.6억원~0.8억원	126,334	4,310	34.1	131,064	5,202	39.7
0.8억원~1억원	81,333	3,527	43.4	84,612	4,272	50.5
1억원~2억원	118,116	6,074	51.4	131,185	8,028	61.2
2억원~3억원	9,901	722	72.9	12,519	1,273	101.7
3억원~5억원	3,750	506	134.9	4,995	855	171.2
5억원~10억원	1,301	363	279.0	1,774	610	343.9
10억원 초과	459	248	540.3	665	422	634.6
합계	783,317	25,465	32.5	791,272	31,813	40.2

증이 더욱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전국적인 재정수입 순증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개인주민세의 세수 감소”는 모금액이 증가하는 고향납세제가 아닌 대부분 도시 지역인 주소지에서 발생해서 “지역간 역차별”의 문제점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에서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일본의 2008년~2023년의 개인의 고향납세 금액 및 건수는 <표 15> 및 <그림 2>와 같다. 모금액은 81억엔(2008년) → 1조1,175억엔(2023년)으로 급증했는데, 2022년에는 동(同)모금액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의 4.5%에 이르렀다.

기부대상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고,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1%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2015년 이후의 모금실적 급증은 다양한 답례품을 취급하는 민간플랫폼의 허용(2013년)과 함께 전술한 원스톱 특례제도의 도입(2015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림 2> 일본의 개인의 고향납세 금액 및 건수(2008년~2023년)



\*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각 연도[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調査結果」”, 各年度,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최종방문일 : 2026. 4. 20.)].

〈표 15〉 일본의 개인의 고향납세 금액 및 건수(2008년 ~ 2023년)

연도	모금액(억엔)	모금건수(만건)	연도	모금액(억엔)	모금건수(만건)
2008년	81.4	5.4	2018년	5,127.1	2,322.4
2009년	77.0	5.6		(1,140.7)	(581.0)
2010년	102.2	8.0	2019년	4,857.4	2,333.6
2011년	121.6	10.1		(1,166.7)	(594.0)
2012년	104.1	12.2	2020년	6,724.9	3,488.8
2013년	145.6	42.7		(1,808.5)	(1,006.5)
2014년	388.5	191.3	2021년	8,302.4	4,447.3
2015년	1,652.9	726.0		(2,392.0)	(1,401.1)
	(286.7)	(147.7)	2022년	9,654.1	5,184.3
2016년	2,844.1	1,271.1		(2,961.4)	(1,738.7)
	(501.2)	(256.7)	2023년	11,175.0	5,894.6
2017년	3,653.2	1,730.2		(3,515.1)	(2,048.2)
	(705.7)	(376.1)			

\* 자료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각 연도[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調査結果」”, 各年度,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최종방문일 : 2026.4.20.)].

\* 괄호의 값은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실적임.

2008년~2022년의 고향납세의 모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는 <그림 3>과 같다. 즉, 2014년 이후에 총인구수가 급감했는데, 이것은 인지도가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단체에 집중되었던 고향납세가 민간플랫폼의 허용에 따른 다양한 답례품의 취급에 따라 인기가 많은 농수산물·해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구가 작은 지방의 단체로 크게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6), 37), 38)</sup>

36) 요미우리신문, “고향 납세로 세수 115억엔 잃고, 가와사키 시장 “전국 제일의 영향” 과 불만”, 2023. 9. 23.자 기사에 의하면 요코하마시는 “새로운 답례품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PR 강화를 위해 게재하는 민간포털 사이트 수를 2곳에서 7곳으로 확충

했다고 하였다.

37) 2013년~2014년과 2021년~2022년의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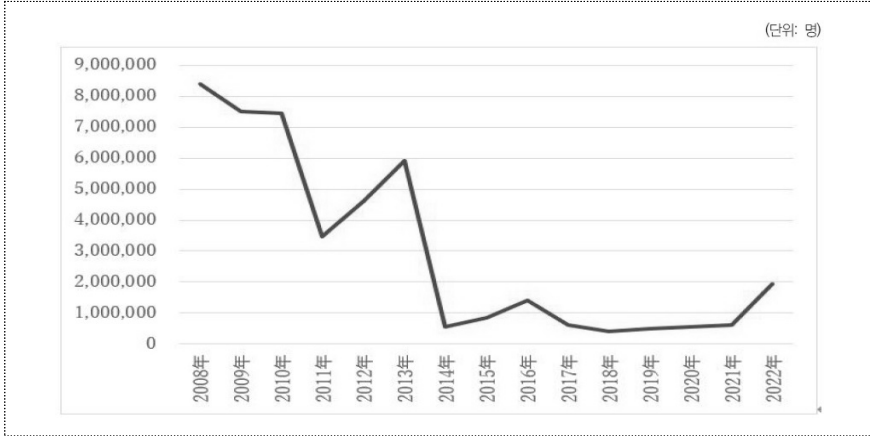
<일본의 고향납세액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2013년~2014년 및 2021년~2022년)>

순위	2013년				2014년			
	도도부현	시정촌	수입액(천엔)	인구(인)	도도부현	시정촌	수입액(천엔)	인구(인)
1	도쿄도	미타카시	429,789	180,194	나가사키현	히라도시	1,462,597	33,822
2	도쿄도	후쿠시	375,695	253,288	사가현	겐카이정	1,066,630	6,139
3	군마현	다카시카시	314,431	375,229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	957,169	4,924
4	아이치현	나고야시	293,798	2,254,891	미야자키현	아야정	943,968	7,697
5	돗토리현	요나고시	279,241	150,313	아마카타현	텐도시	780,875	62,171
6	나가노현	아난정	265,444	5,142	시마네현	하마다시	726,992	57,504
7	사가현	겐카이정	248,594	6,260	나가노현	이이아마시	625,473	22,764
8	미야자키현	아야정	247,328	7,652	사가현	오시로시	511,962	46,003
9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	243,503	5,046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499,823	169,461
10	오사카부	오사카시	187,931	2,667,830	돗토리현	요나고시	475,690	149,857
순위	2021년				2022년			
	도도부현	시정촌	수입액(천엔)	인구(인)	도도부현	시정촌	수입액(천엔)	인구(인)
1	홋카이도	몬베츠시	15,296,767	20,928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19,592,615	161,605
2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14,616,191	162,572	홋카이도	몬베츠시	19,432,906	20,618
3	홋카이도	네무로시	14,604,567	24,231	홋카이도	네무로시	17,612,782	23,546
4	홋카이도	시라누카정	12,521,863	7,391	홋카이도	시라누카정	14,833,646	7,234
5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	11,346,705	98,840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	13,771,905	98,545
6	미야자키현	쓰노정	10,945,146	10,333	사가현	카미미네정	10,873,990	9,789
7	효고현	스모토시	7,842,264	42,307	교토부	교토시	9,507,775	1,385,190
8	후쿠이현	쓰루가시	7,722,015	64,333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9,085,607	125,753
9	아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7,213,867	47,744	아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8,806,033	47,298
10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6,563,981	126,555	후쿠이현	쓰루가시	8,748,810	63,662

\* 자료 : 일본 총무성, “각 지자체의 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및 “시정촌별 결산 상황 조사”, 각 연도(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調査結果」”, 各年度,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최종방문일 : 2026. 4. 20.) 및 総務省, “市区町村別の人口及び世帯数”, 各年度, [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최종방문일 : 2026. 4. 20.)].

38) 단, 2022년의 총인구수 증가는 고향납세로 인한 개인주민세의 공제를 통한 지방세 수의 유출이 계속되는 도시 지역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 일본의 고향납세액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2008년~2022년)



\* 자료 : 일본 총무성, “각 지자체의 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및 “시정촌별 결산 상황 조사”, 각 연도(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調査結果」”, 各年度,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최종방문일 : 2026. 4. 20.) 및 総務省, “市区町村別の人口及び世帯数”, 各年度, [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최종방문일 : 2026. 4. 20.).

2015년~2021년의 고향납세로 인한 개인주민세의 공제액이 많은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는 <그림 4>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향납세로 인한 전국적인 재정수입 순증에도 불구하고 동(同)공제액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모금액이 증가하는 고향납세처가 아닌 대부분 도시 지역인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림 4>에서도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동(同)공제액이 많은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또한, 1인당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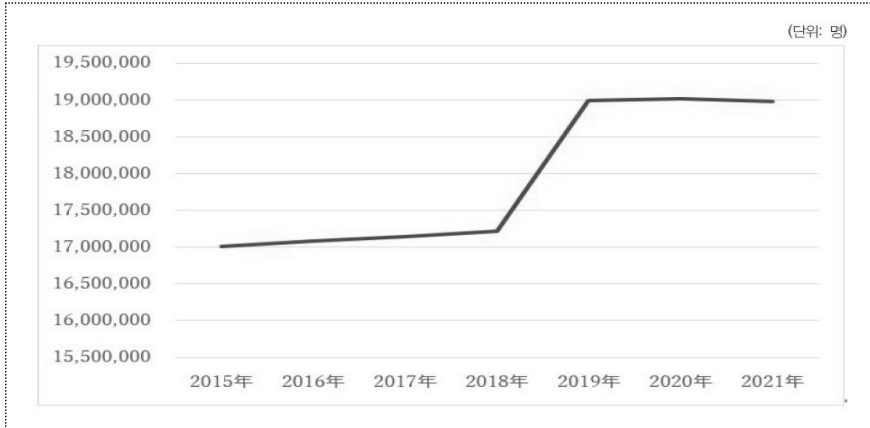
39) 2015년과 2021년의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의 고향납세에서 개인주민세 공제액이 많은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 (2015년 및 2021년)>

순위	2015년				2021년			
	도도부현	시정촌	공제액(천엔)	인구(인)	도도부현	시정촌	공제액(천엔)	인구(인)
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3,153,590	3,729,357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23,008,902	3,755,793
2	아이치현	나고야시	1,919,003	2,269,444	아이치현	나고야시	14,314,921	2,293,437

주민세 공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그림 4> 일본의 고향납세에서 개인주민세 공제액이 많은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2015년~2021년)



\* 자료 : 일본 총무성, “각 지자체의 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및 “시정촌별 결산 상황 조사”, 각 연도[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調査結果」”, 各年度,

순위	2015년				2021년			
	도도부현	시정촌	공제액(천엔)	인구(인)	도도부현	시정촌	공제액(천엔)	인구(인)
3	오사카부	오사카시	1,685,412	2,681,555	오사카부	오사카시	12,359,294	2,732,197
4	도쿄도	세타가야구	1,644,361	883,289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10,291,327	1,522,390
5	도쿄도	마나토구	1,540,961	243,977	도쿄도	세타가야구	8,395,661	916,208
6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1,281,454	1,459,768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7,391,043	1,332,226
7	효고현	고베시	1,075,558	1,547,850	효고현	고베시	7,000,406	1,517,627
8	교토부	교토시	1,003,000	1,419,549	홋카이도	삿포로시	6,638,792	1,960,668
9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892,390	1,270,476	교토부	교토시	6,443,055	1,388,807
10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846,129	1,500,955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6,254,582	1,568,265

\* 자료 : 일본 총무성, “각 지자체의 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및 “시정촌별 결산 상황 조사”, 각 연도[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調査結果」”, 各年度,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최종방문일 : 2026. 4. 20.) 및 総務省, “市区町村別の人口及び世帯数”, 各年度, [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최종방문일 : 2026. 4. 20.)].

40) 1인당 개인주민세 공제액을 기준으로 2015년과 2021년의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최종방문일 : 2026. 4. 20.) 및 総務省, “市区町村別の人口及び世帯数”, 各年度, [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최종방문일 : 2026. 4. 20.).

### Ⅲ. 지방재정 관점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안

#### 1. 지방소득세의 부당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 체계의 개편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주소지 지자체에 대한 기부 금지로 인해 <표 12>와 같이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

<일본의 고향납세에서 1인당 개인주민세 공제액이 많은 상위 10개 단체의 총인구수 (2015년 및 2021년)>

순위	2015년			2021년		
	도도부현	시정촌	1인당 공제액(엔)	도도부현	시정촌	1인당 공제액(엔)
1	도쿄도	미나토구	6,316.0	도쿄도	미나토구	23,832.3
2	도쿄도	지요다구	5,239.4	도쿄도	지요다구	23,360.9
3	도쿄도	주오구	3,467.5	도쿄도	주오구	17,573.2
4	도쿄도	시부야구	3,330.2	도쿄도	시부야구	15,733.5
5	홋카이도	호쿠류정	3,072.0	도쿄도	메구로구	12,228.3
6	도쿄도	분쿄구	2,525.9	도쿄도	분쿄구	12,109.4
7	도쿄도	메구로구	2,229.7	아마나시현	오시노촌	10,122.4
8	효고현	아시아시	2,149.2	도쿄도	시나카와구	9,780.2
9	도쿄도	신주쿠구	1,999.5	도쿄도	신주쿠구	9,646.2
10	아마나시현	오시노촌	1,888.8	효고현	아시아시	9,191.3

\* 자료 : 일본 총무성, “각 지자체의 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및 “시정촌별 결산 상황 조사”, 각 연도(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調査結果」”, 各年度, [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archive/)(최종방문일 : 2026. 4. 20.) 및 総務省, “市区町村別の人口及び世帯数”, 各年度, [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17216_1.html)(최종방문일 : 2026. 4. 20.).

로 거액의 기부금 순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표 7>의 조특법상 고향 사랑기부금세액공제의 1/10만큼 적용되는 지방소득세의 공제액(이하 “지방세 공제액”)이 주소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수입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표 10>과 같은 매우 낮은 기부금 수입의 비중에 비해 과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이하 “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지방세 공제액의 시·도별 분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표 13>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소득계층별 분포와 함께 시·도별 소득계층 분포를<sup>41)</sup> 결합해서 도출하는 <표 16>의 동(同)세액공제의 시·도별 분포를<sup>42)</sup> <표 10>의 모금액의 시·도별 분포와 비교해서 기부금 수입·

41) <표 13>과 같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시·도별 소득계층 분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의 규모별 시·도별 분포  
(2023년~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명·백만원·천원)	2023년			2024년		
	서울	7개 광역시	9개 시·도	서울	7개 광역시	9개 시·도
0.1억원 이하	19.4%	26.1%	54.5%	19.3%	26.2%	54.5%
0.1억원~0.15억원	19.6%	25.5%	54.9%	19.7%	25.5%	54.8%
0.15억원~0.2억원	18.8%	25.8%	55.4%	18.8%	25.9%	55.3%
0.2억원~0.3억원	18.0%	25.7%	56.3%	17.8%	25.7%	56.5%
0.3억원~0.4억원	18.4%	24.8%	56.8%	18.1%	24.9%	57.0%
0.4억원~0.45억원	18.0%	24.5%	57.4%	17.8%	24.6%	57.6%
0.45억원~0.5억원	18.0%	24.5%	57.5%	17.9%	24.6%	57.6%
0.5억원~0.6억원	18.5%	24.6%	56.9%	18.3%	24.5%	57.2%
0.6억원~0.8억원	19.8%	24.2%	56.0%	19.7%	24.4%	55.9%
0.8억원~1억원	21.3%	23.9%	54.8%	21.0%	23.8%	55.2%
1억원~2억원	27.7%	21.0%	51.3%	27.0%	21.3%	51.7%
2억원~3억원	40.9%	17.6%	41.6%	40.7%	17.5%	41.8%
3억원~5억원	46.8%	17.0%	36.1%	46.6%	17.5%	35.8%
5억원~10억원	55.3%	13.1%	31.6%	55.3%	13.9%	30.9%
10억원 초과	65.1%	10.9%	24.0%	65.2%	11.5%	23.3%
합계	19.6%	24.8%	55.6%	19.5%	24.8%	55.7%

4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시·도별 분포는 아래와 같이 2024년까지 동일한 조세혜택을 제공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 과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6> 시·도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액  
(2023년~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서울	8,499.2	22.0%	12,762.7	21.4%
부산	2,014.0	5.2%	3,107.3	5.2%
대구	1,442.9	3.7%	2,236.6	3.8%
인천	2,127.1	5.5%	3,370.8	5.7%
광주	947.8	2.4%	1,449.2	2.4%
대전	1,055.6	2.7%	1,633.3	2.7%

<시·도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2023년~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서울	5,958.6	23.4%	7,632.2	24.0%
부산	1,319.3	5.2%	1,635.5	5.1%
대구	933.9	3.7%	1,154.9	3.6%
인천	1,366.4	5.4%	1,706.9	5.4%
광주	619.1	2.4%	754.4	2.4%
대전	678.9	2.7%	839.6	2.6%
울산	678.8	2.7%	849.6	2.7%
세종	265.7	1.0%	329.5	1.0%
경기	7,475.6	29.4%	9,326.1	29.3%
강원	563.0	2.2%	683.0	2.1%
충북	739.0	2.9%	905.8	2.8%
충남	1,020.8	4.0%	1,260.6	4.0%
전북	629.3	2.5%	769.2	2.4%
전남	663.7	2.6%	816.3	2.6%
경북	971.5	3.8%	1,181.8	3.7%
경남	1,347.2	5.3%	1,682.7	5.3%
제주	234.0	0.9%	285.1	0.9%
합계	25,465	100%	31,813	100%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울산	1,043.9	2.7%	1,592.6	2.7%
세종	436.7	1.1%	672.1	1.1%
경기	11,431.8	29.5%	17,636.5	29.6%
강원	898.0	2.3%	1,392.2	2.3%
충북	1,168.1	3.0%	1,832.6	3.1%
충남	1,604.7	4.1%	2,504.2	4.2%
전북	985.8	2.5%	1,533.7	2.6%
전남	1,034.9	2.7%	1,616.2	2.7%
경북	1,531.6	4.0%	2,366.5	4.0%
경남	2,125.1	5.5%	3,348.3	5.6%
제주	355.7	0.9%	550.1	0.9%
합계	38,703	100%	59,605	100%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불충분한 과세소득 및 다른 소득의 발생으로 인해 시·도별 기부금액은 <표 16>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역산한 결과에 비해 작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시·도별 비율은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시·도별 재정수입의 증감분을 최소한의 규모에서 <표 17>과 같이 개산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낮은 모금액 비율(<표 10>과 같이 2023년~2024년에 3.8% 및 3.5%)에 비해 기부금액의 규모를 반영하는 세액공제액 비율(<표 16>과 같이 2023년~2024년에 22.0% 및 21.4%)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억원과 11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비율 간 괴리(모금액 비율(6.0%·6.1%) ↔ 세액공제액 비율(29.5%·29.6%))를 나타내는 경기도(9억원과 14억원의 재정손실)와는 사실상 일치하는 반면 상반된 비율 간 괴리(모금액 비율(22.0%·30.8%) ↔ 세액공제액 비율(2.7%·2.7%))를 나타내는 전라남도(8억원 및 11억원

의 재정이득) 등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표 17> 기부금 수입·공제 과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시·도별 재정수입의 증감  
(2023년~2024년)

(백만원)	2023년	2024년	(백만원)	2023년	2024년
서울	-702*	-1,065	강원	225	335
부산	-126	-179	충북	68	106
대구	-100	-163	충남	97	180
인천	-167	-268	전북	406	478
광주	-4	162	전남	750	1,109
대전	-68	-28	경북	382	468
울산	-45	-56	경남	159	180
세종	-35	-47	제주	73	188
경기	-911	-1,400	합계	0	0

\* 8,499백만원 × 10% × {(3.8% - 22.0%) ÷ 22.0%}

기부금 수입·공제 과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재정손실(예컨대, 서울시는 2023년~2024년에 7억원 및 11억원)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작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동(同)재정손실의 과소 계상과 함께 <표 15> 및 <그림 2>와 같이 고향납세제도의 정착 이후에 모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81억엔(2008년)→1조1,175억엔(2023년))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재정손실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매우 큰 제약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향납세로 인한 일부 지자체의 세입 감소의 문제점은 일본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되었지만, 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자체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본의 시행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지자체의 잠재적인 과도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일본에서는 답례품 경쟁<sup>43)</sup> 등으로 인한 고향납세제도의 전국적 확산

43) 라쿠텐에서 일반 상품 대신 고향납세 답례품이 먼저 표시되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개인주민세 수입의 감소와 이로 인한 주민서비스의 악화가<sup>44), 45)</sup> 발생해서 2020년대 이후에는 이들 지자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동(同)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예컨대, 개인주민세 수입의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도쿄도의 23개구 구장회는 2020년에 동(同)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회계연도의 도쿄도의 23개구의 개인주민세 총유출액은 708억엔을 초과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광역지자체인 도쿄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려해서 도입 당시부터 동(同)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2019년부터는 고향납세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sup>46)</sup>

“기부금 수입·공제 피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장래의 과도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17>의 시·도별 재정수입 증감을 정산해서 지방소득세의 과다공제로 인한 “재정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즉, <표 17>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시·도별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바탕으로 재정이득이 발생한 시·도의 증가분 합계액(예컨대, 2024년의 경우에는 <표 17>의 광주·강원...제주의 합계액인 32억원)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한 시·도의 감소분 합계액(예컨대, 2024년의 경우에는 <표 17>의 서울...인천·대전...경기의 합계액인 동일한 규모의 32억원)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시·군세이기 때문에

---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44)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교육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세수의 감소가 대도시 지역의 교육인프라의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45) 실질 개인주민세 유출액이 최상위권인(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과 2021년의 총공제액이 각각 6위 및 4위) 도쿄 인근의 카나가와 현 카와사키시는 개인주민세의 과도한 유출에 분노해서 2020년에 답례품의 가치를 대폭 인상하였다.
- 46) 이와 관련해서 마에카와 아키오 도쿄도 네리마구(練馬区) 구장(전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객원교수)은 고향납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2023년의 NHK 기사에서 “주민이 세금을 부담하여 그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고향납세 제도가 파괴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책임은 크다.”라고 비판하였다.

기초지자체 간의 정확한 정산은 도의 본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지방소득세수의 정산방안은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를 참고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고, 지방소비세액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25.3%}으로 계산하는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즉,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권자가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sup>47)</sup>

개별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납입과 관련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여기서 “납입관리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들 중에서 매년 교체해서 지정하는데,<sup>48)</sup>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의해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동조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분대상인 시·도

47)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0조 제2항).

48)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에 의한 2014년 이후의 납입관리자의 연도별 지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동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그 밖에 개별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납입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금 수입·공제 과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절의 지방소득세 정산 방식도 동(同)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개산한 <표 16>과 다르게 과세연도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통해 확정된 지방세 공제액의 실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정확한 개별 시·도의 지방세 공제액 구성비율(①) 및 모금액 구성비율(②)을 이용해서 식(1)의 정산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금액에 비해 지방세 공제액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① > ②) 과다공제로 인해 재정손실이 발생한(식(1)의 계산결과가 (+)인) 시·도는 정산액을 수령하고, 모금액에 비해 지방세 공제액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① < ②) 과소공제로 인해 재정이득이 발생한(식(1)의 계산결과가 (-)인) 시·도는 정산액을 지급해서 “기부금 수입·공제 과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이러한 정산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공제액과 모금액의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sup>49)</sup>

<납입관리자의 연도별 지정 내역(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연도	납입관리자	연도	납입관리자
2014년	서울특별시	2021년	전라북도지사
2015년	경상남도지사	2022년	전라남도지사
2016년	강원도지사	2023년	충청북도지사
2017년	제주도지사	2024년	세종특별시장
2018년	충청남도지사	2025년	부산광역시
2019년	울산광역시	2026년	광주광역시
2020년	경상북도지사		

49)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에서는 1차적인 시·도별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도의 본청에서 다시 식(1)을 이용해서 개별 시·군에 대한 추가적 정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text{개별 시·도의 지방소득세 정산액} = (\text{지방세 공제액}^* \div \text{①}) \times (\text{②} - \text{①}) \quad (1)$$

((+)인 경우에는 보전액, (-)인 경우에는 지급액)

\* 조특법상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의 1/10만큼 적용되는 지방소득세의 공제액

- ① 개별 시·도의 지방세 공제액 구성비율
- ② 개별 시·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구성비율

이상의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세법개정 방안은 <표 18>과 같다.

<표 18> 지방소득세의 부당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 방안

현행	개선안
<신설>	<p>제90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거주자의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개별 시·도별로 합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도별 공제액”이라 한다)이 시·도별 공제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액 비율”이라 한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을 개별 시·도별로 기부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도별 기부금”이라 한다)이 시·도별 기부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시·도로부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도별 보전액”이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지방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p> <p>시·도별 보전액 = (시·도별 공제액 ÷ 공제액 비율) × (기부금 비율 - 공제액 비율)</p> <p>② 개별 시·도의 공제액 비율이 기부금 비율이 더 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시·도에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도별 지급액”이라 한다. 다</p>

현행	개선안
	<p>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지방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p> <p>시·도별 지급액 = (시·도별 공제액 ÷ 공제액 비율) × (공제액 비율 - 기부금 비율)</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법인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시행 방안

2025년말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에 제안된 15건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법률안은 전부 의원입법안이고,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다수의 동(同)개정법률안은 전술한 일본의 “기업관 고향납세제도”와 같이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제22대 국회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허용 관련, 2025년말 기준)

연번	제안일자	발의자	주요내용
1	2024. 7. 23.	서삼석의원 등 10인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2024. 8. 2.	최은석의원 등 10인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확대
3	2025. 4. 23.	이춘석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경우 기부자에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을 추가하고, 광역지자체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2025. 9. 4.의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고, “앞으로도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발언하였다.<sup>50)</sup> 그러나,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제도”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 2024. 7. 18.의 “제2차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기부 도입관련 포럼”에서는 법인 기부의 허용과 관련한 주요 위험요소를 <표 20>과 같이 제기하였다.

<표 20>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 허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주요 위험요소  
(제2차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기부 도입 관련 포럼, 2024. 7. 18.)

항목	내용
기부의 준조세화 위험	지자체가 기업에 사실상 기부를 강요하는 준조세로 변질 가능성
전략적 기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기업 밀집 지역에 기부 집중
세수 감소 가능성	법인세 공제로 인한 국세·지방세 감소
기존 기업기부의 이동(구축효과)	순수 기부가 아닌 기존 기부의 전환
기부 부담의 소비자·근로자 전가	기업 기부 비용이 제품 가격 인상이나 임금 억제로 전가
기업·지자체 유착 우려	기부를 매개로 지자체와 업체 간의 뒷거래가 성행

또한, <표 19>의 개정법률안 중 서삼석의원안 및 최은석의원안(연번 1·2)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2024)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① 법인·단체는 전국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준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②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50) 행정안전부,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개최”, 2025. 9. 5.자 보도자료에서 인용하였다.

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동(同)검토보고서는 이들 의원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 서삼석의원안 및 최은석의원안에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입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처	입장
행정 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참여 허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기부강요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한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함.
기획 재정부	법인의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감면 혜택 제공 부담이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표 19>의 개정법률안 중 이춘석의원안(연번 3)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2025)도 이와 유사하게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의 기부 허용시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기부금을 준조세로 인식하는 것 등과 같은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 대상, 세액 공제 범위, 기부의 상하한액 및 기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동(同)검토보고서는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업판 고향납세”를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인기부 모델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한 제도설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해서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인과 지자체 간 인허가, 계약, 보조금 및 규제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부가 “관계자금”이나 “거래성자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동(同)제도의 철학을 훼손할 수 있는<sup>51)</sup> 법인 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법인 또는 단체와 함께 이들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정치자금법 제31조) 것과 유사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전술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같이 실제 법인 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개인 기부와 관련한 앞선 절의 “기부금 수입·공제 과리의 문제점”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해서 특정 지자체의 기부금 수입의 비중을 비해 재정수입이 과도하게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표 19>의 개정법률안은 대부분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기부의 기부자를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단체로 규정했는데,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의 특정 지자체 집중이 더욱 현저한 상황<sup>52)</sup> 고려하면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다른 법인세의 손금산입<sup>53)</sup> 방식의 조세혜택 및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한 낮은 법인 공제의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되,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앞선 절의 식(1)과 같은 정산절차를 지방세법령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51)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2024. 7. 18.자 “제2차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기부 도입관련 포럼”의 발언이다(고향사랑리포트, “법인기부 논쟁, 고향사랑기부제 ‘성장’인가 ‘변질’인가”, 2026. 1. 6.자 기사에서 인용하였다).

52) 최근 5년간의 소득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과 법인세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시·도별 비중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특정 지자체 집중의 상황은 법인세가 더욱 현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과 법인세 신고 현황의 시·도별 비중 (2020년~2024년의 평균)>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법인세 신고 현황			
	인원	총급여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고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서울	19.7%	22.9%	24.9%	32.6%	29.4%	50.0%	46.9%	52.5%
부산	6.0%	5.4%	5.2%	4.7%	5.0%	3.3%	4.0%	3.9%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법인세 신고 현황			
	인원	총급여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고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대구	4.2%	3.8%	3.6%	3.0%	3.0%	2.4%	1.9%	1.6%
인천	6.1%	5.5%	5.1%	4.1%	4.4%	3.4%	4.0%	3.8%
광주	2.7%	2.5%	2.4%	2.1%	2.8%	1.3%	1.5%	1.5%
대전	2.8%	2.7%	2.6%	2.3%	2.2%	1.3%	1.6%	1.5%
울산	2.2%	2.5%	2.6%	2.6%	1.3%	1.5%	1.1%	1.0%
세종	0.8%	1.0%	1.0%	0.9%	0.5%	0.2%	0.3%	0.2%
경기	28.5%	29.1%	29.2%	29.1%	26.8%	19.4%	22.5%	20.4%
강원	2.7%	2.3%	2.2%	1.5%	2.2%	0.8%	0.9%	0.7%
충북	3.1%	2.9%	2.8%	2.2%	2.7%	1.7%	1.9%	1.6%
충남	4.0%	3.9%	3.9%	3.3%	3.6%	3.4%	3.0%	2.6%
전북	3.0%	2.6%	2.4%	1.8%	3.0%	1.2%	1.3%	1.0%
전남	2.9%	2.7%	2.5%	2.1%	3.6%	2.9%	1.7%	1.4%
경북	4.2%	3.9%	3.7%	3.0%	3.8%	3.4%	3.3%	2.9%
경남	5.9%	5.4%	5.1%	4.0%	4.4%	3.5%	3.3%	2.9%
제주	1.2%	1.0%	0.9%	0.7%	1.4%	0.4%	0.8%	0.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53)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세무조정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법인 기부가 허용될 경우에 고향사랑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동일하게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큰 (한도기준액 × 50%)의 한도액 적용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손금에 산입될(이를 통해 한계세율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세무조정 구조>

단계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1단계	특례기부금	한도기준액* <sup>1</sup> × 50%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단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기준액* <sup>1</sup> × 30%	
3단계	일반기부금	한도기준액* <sup>1</sup> × 10%* <sup>2</sup>	

\*<sup>1</sup> 한도기준액 = (기준소득금액\*<sup>3</sup> - 이월결손금\*<sup>4</sup> - 전단계기부금(들)의 손금산입액\*<sup>5</sup>)

\*<sup>2</sup> 사회적기업은 20%

\*<sup>3</sup>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우리사주조합 및 일반기부금

\*<sup>4</sup>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는 이월결손금(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sup>6</sup>

\*<sup>5</sup> MIN(…기부금 지출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

## IV. 결 론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의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개별 광역·기초지자체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동(同)제도의 확대에는 기부자에 대한 10만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까지의 답례품이(즉, 경제적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및 세액공제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감이 사실상 동일한 상태에서 지자체의 답례품 지출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제외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세액공제(공제액의 90.9%)가 국세인 소득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는 기부금에 비례하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기부금 경쟁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고한 2008년부터 시행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도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同)제도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왜곡된 재정수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시행 초기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합리적 개편방안을 사

---

산입액

\*<sup>6</sup> 기준소득금액의 80%·100%\*<sup>7</sup> 한도 적용

\*<sup>7</sup>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지자체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과 함께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同)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공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제도 개편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조세법적 관점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안은 먼저, 지방소득세의 부당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개편이다.

즉,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주소지 지자체에 대한 기부 금지로 인해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거액의 기부금 순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특법상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의 1/10만큼 적용되는 지방소득세의 공제액(“지방세 공제액”)이 주소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수입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기부금 수입의 비중에 비해 과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

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작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동(同)재정손실의 과소계상과 함께 고향납세제도의 정착 이후에 모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81억엔(2008년)→1조1,175억엔(2023년))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재정손실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매우 큰 제약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향납세로 인한 일부 지자체의 세입 감소의 문제점은 일본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되었지만, 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자체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본의 시행사례는 특정 지자체의 잠재적인 과도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일본에서는 담레품 경쟁 등으로 인한 고향납세제도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개인주민세 세입의 감소와 이로 인한 주민서비스의 악화가 발생해서 2020년대 이후에는

이들 지자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동(同)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기부금 수입·공제 피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장래의 과도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재정수입 증감을 정산해서 지방소득세의 과다공제로 인한 “재정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정확하게 계산한 시·도별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바탕으로 재정이득이 발생한 시·도의 증가분 합계액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한 시·도의 감소분 합계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시·군세이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간의 정확한 정산을 도의 본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지방소득세수의 정산방안은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를 참고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제22대 국회에 제안된 다수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법률안은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제도”와 같이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인과 지자체 간 인허가, 계약, 보조금 및 규제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부가 “관계자금”이나 “거래성자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같이 실제 법인 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개인 기부와 관련한 “기부금 수입·공제 피리의 문제점”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해서 특정 지자체의 기부금 수입의 비중에 비해 재정수입이 과도하게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수의 개정법률안은 대부분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기부의 기부자를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단체로 규정했는데,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의 특정 지자체 집중이 더욱 현저한 상황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다른 법인세의 손금산입 방식의 조세혜택 및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한 낮은 법인 공제의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되,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산절차를 지방세법령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參 考 文 獻

- 곽재훈·신승근, “지방자치단체 인구 및 재정 상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답례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중호·오가와 아키노부·염명배,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비교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9권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 김홍환·이경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8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 송영현,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확충효과 모의실험 — 충청남도를 사례로”, 『GRI 연구논총』 제25권 제3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 신두섭·염명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제18집 제4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6.
- 신승근·조정희,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 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 \_\_\_\_\_,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적정화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한국의정연구회, 2024.
- 심재승,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
- 염명배,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3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20.
- \_\_\_\_\_,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 \_\_\_\_\_,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경영전략적 접근 —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3+1 마케팅 전략’ 제안”, 『경제연구』 제41권 제3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23.

- \_\_\_\_\_, “제21대 국회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동향 및 평가”,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2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24.
- 오충택·나주몽,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플랫폼 사례를 통한 한국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착 방안에 대한 일고찰”, 『아시아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아시아연구소, 2022.
- 유보람·박지영·신두섭,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예비 기부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정부학회, 2024.
- 이동호, “일본 고향납세제 운영의 주요 특징과 수산물 답례품 관련 주요 논제 —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제언”, 『한국도서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도서(섬)학회, 2023.
- 이상신,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에 따른 과세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논집』 제9권 제3호, 한국지방세학회, 2022.
- 이선희·이준영,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모금활성화 과제”, 『인문사회21』 제14권 제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3.
- 이현주·곽경린·이재현·이혜지·김영욱, “유튜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의 메시지 소구가 기부도에 미치는 영향: 시청만족도와 지역이미지를 매개로 한 분석”, 『광고연구』 제137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23.
- 임정빈·김성찬·홍근석,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4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 전영준·홍근석,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 조원영·강기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식공간융합연구』 제18권 제3호, (사)한국식공간학회, 2023.
- 조진우,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 과제”, 『비교법연구』 제22권 제1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2.
- 최근열·남인수,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2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 홍근석·염명배·심두섭,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 홍근석·임정빈,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3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9.
- 황이경·김남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공법연구』 제51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23.
- 황해동,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언 — 기초와 광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22.
- 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http://www.ilovegohyang.go.kr).
- 국가법령정보, [law.go.kr](http://law.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http://taxlaw.nts.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http://likms.assembly.go.kr).
-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http://www.samili.com).
- 행정안전부, [www.mois.go.kr](http://www.mois.go.kr).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각 연도.
- \_\_\_\_\_, “각 지자체의 고향 납세 수입액 및 수입 건수”, 각 연도.
- \_\_\_\_\_, “시정촌별 결산 상황 조사”, 각 연도.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www.soumu.go.jp](http://www.soumu.go.jp).

<Abstract>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Hometown-Loving Donation  
from View of Local Finance**

Jun, Byung Wook\*

The successful early enforcement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HLD” hereafter), adopted in 2023, is largely due to full-amount tax credit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return presents. However, the effect of HLD is very discriminative, and HLD could have a very negative effect on the tax revenues of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This kind of problem has actually happened in Japan, where a similar system was adopted as early as in 2008, and thus how to rationally revise HLD from view of tax law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or the long-term and stable management of HLD.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HLD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adjustment measures of local income tax credit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forced. That is, as the donation amount is expected to rise rapidly in the future, the tax revenue loss of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losing municipalities”) from HLD is also predicted to grow fast and, as a result, to become a serious obstacle of the financial operation of those governments. Thus, the tax revenue profit of other governments (“winning municipalities”) from HLD should be presented to losing municipalities. Detailed methods of the adjustment measures could be referred to the enforcement cases of local consumption tax.

Furthermore, HLD should not be allowed to the donation of corporations considering its potential harmful effects. However, in case it is allowed, as the tax revenues loss of losing municipalities could be much more serious than that for the donation of individuals, the same adjustment measures of local income tax credit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be implemented.

▶ **Key Words** : hometown-loving donation, local income tax, tax credit,  
adjustment measures, local consumption tax

---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